농림축산식품부	보도자료	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

2019년 12월 9일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과장 권혁일(054-429-4071), 사무관 한창형(4072)/ 제공일: 12월 6일(총 5매)

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

-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내년 1월 23일까지 점검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◈ **겨울철을 맞아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동절기 일제점검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**

○ 점검기간: 2019.12.9. ~ 2020.1.23.(46일)

○ 점검대상: 면세유 사용 농업인(법인), 면세유 취급 석유판매업자, 면세유 배정 관리기관(지역농협)

○ 점검인원: 252개반 504명

○ 점검내용: 농업인의 면세유 부정사용, 주유소의 카드깡 등 부정유통, 지역농협의 면세유 관리부실 등

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원장 노수현, 이하 '농관원)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19.12.9.~2020.1.23.까지 46일간 **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·사용 일제점검**을 실시한다.

○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,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해 왔다.

❑ **점검대상**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**농업인·농업법인**, 주유소 등 면세유 **판매업자**,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**지역농협**이 대상이다.

○ 주요 점검내용은 **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**하는 행위, **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**하는 행위, **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**한 경우, **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하여 면세유를 부정유통**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한다.

○ 또한,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.

○ **주요 점검 농기계**는 **농업용난방기, 농산물건조기, 버섯재배 소독기, 화물자동차, 농업용 로더**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추출·점검한다.

❑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 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,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,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.

○ **위반행위자**는 **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,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**를 받게 된다.

❑ 한편, **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 및 관련 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국 어디서나 "1588-8112"로 문의**하면 된다.

참고 1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 개요

❑ 농가의 영농비 부담 경감을 위해 '86.3.1.부터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(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세, 주행세 등)을 전액 면제
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(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)

❑ 공급기한·대상 및 면세유종

○ (공급기한) '21.12.31일까지 농업인에게 공급하는 물량에 한하여 적용

- 한시적으로 도입, 현재 10차례 연장하여 '21.12.31일까지 면제

* 기재부 "2018 세법개정안('18.7.31.)"에 공급기한 3년 연장

○ (면세유종) 휘발유, 경유, 등유, 중유, 윤활유, LPG, 부생연료유

○ (공급대상)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농업기계 농업용 트랙터, 난방기,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 42개종(농림특례규정 시행규칙 제7조)

❑ 농가별 배정기준

○ (난방용) 작목별 가온기준, 축종별 사육두수별로 배정

○ (농기계용) 기종별/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, 연간평균사용기간

❑ 농업용 면세유 공급실적('14~'18년)

구 분	2014	2015	2016*	2017	2018
공급량(만㎘)	164	153	134	137	143
구입액(억원)	16,681	10,950	7,808	9,250	11,210
면세액(억원)	10,278	8,557	6,073	6,428	6,766

* 16년부터 난방기에 경유를 등유로 공급하여 면세유 사용량 급감

❑ '19년 배정농가 및 배정량 : 917천호(총 농가 970천호), 185만㎘

참고 2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 벌칙 규정

[조세특례제한법 위반자 벌칙 규정]

❑ 관리기관

○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

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

○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가산세 추징

-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농업인 등 외의 자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한 경우

❑ 비농업인

○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

-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 받거나 농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양수 받은 경우
- 농업인 등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는 경우

❑ 농업인

○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

-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
- 농업인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(석유류)를 양수 받은 경우

○ 2년간 면세유류 사용제한

- 농업기계 등 보유 현황 신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
- 농기계 등의 취득, 양도 또는 농업인의 사망, 이농 등의 변동 신고를 30일 이내 하지 아니한 경우
- 농업인이 발급받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과 그 면세유류 카드 등으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
-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

❑ 석유판매업자

○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가산세 추징과 지정취소 및 5년간 면세유 판매금지

- 환급·공제세액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. 다만,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징수는 부당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

[조세범 처벌법 규정]

제4조(면세유의 부정유통) ①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제2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류를 같은 호에서 정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·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·공제를 받은 석유판매업자(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를 말한다)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

② 제1항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자로부터 취득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판매가액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제4조의2(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의 부정발급)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6조의2 제11항 제1호의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